

 학생중심, 현장중심

202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 계획



2022. 1.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202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 계획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I. 추진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 제5차 경기도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 2022년도 교육부 특수교육 운영 계획
- 2022년도 경기도 특수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 경기도교육청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20~'22)

II. 추진 목적

-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역량 강화 및 진로 다양화
-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안착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학교에서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 성과 도모
-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확립으로 장애학생 취업지원 효율화 도모
- 장애학생 미래생활역량 강화 및 개인의 진로희망에 따른 사회참여기회 확대

Ⅲ.

세부 추진 계획

1.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가.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미래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단계별 진로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나. 방침

- 1)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 2) 진로 정보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선택 다양화 도모
- 3)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 4)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
- 5) 장애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특성화된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다. 세부 운영 계획

- 1)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은 해당 학년(학급)의 편제와 시간배당을 따르되, 일반교육과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교과(의 내용)를 대신하여 ‘생활기능 및 진로와 직업교육, 현장실습’ 등을 ‘교과내용 대체’의 방식으로 조정하여 운영 가능
- 2) 고등학교 과정에서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특정 교과(진로와 직업, 음악, 체육 등)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문 직업인 양성
 - 예술 교과 중점 학교: 홀트학교(2020년 지정, 3년차)
 - 체육 교과 중점 학교: 에바다학교(2020년 지정, 3년차)
 - 진로와직업 중점 학교: 의왕정음학교, 용인다움학교(2021년 지정, 2년차), 새얼학교(2020년 지정, 3년차)

3) 현장실습 다양화 및 참여 기회 확대

< 현장실습 수업 인정 근거 >

-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 방법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진로 및 직업교육 내용, 의무교육의 비용 등),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등
- 교육과정 근거: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3호)

- 교육과정 내에서 안정적인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전문교과Ⅲ ‘**직업현장실습**’ 과목 활용 권장*
- 직업재활 전문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하여 현장중심 맞춤형 직무체험
- 복지일자리, 맞춤형 일자리사업, 학교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정부주도형 취업연계형 현장실습 기회 제공 확대

4)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 발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체험기회 제공

5)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에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개별화전환교육계획(ITP)을 포함하여 작성

6) 개별 학생의 진로역량에 대한 풍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장애인 전문 직업평가기관과 연계한 직업평가 체계 구축·운영

- 경기도직업재활시설협회, 직업평가센터, 장애인복지관, 진로직업특수교육 지원센터 전문 평가사를 통해 고1 학생 중심 직업평가 지원

7)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기관 간 다양한 직업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 공유

- 권역별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사업체, 직업재활 시설,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지원

8) 특수학교(급)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사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진로 직업교육 역량 강화

9)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초·중학교 진로인식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 10)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학교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2차 사후관리(자조모임) 지원 및 근로자, 직무담당자 간담회 지원
- 11) 대학생활 체험 기회 제공으로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 촉진 및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인근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추진(유형: 체험형, 입시형, 통합형(입시+체험)) - 별도계획 안내 예정

라. 특수학급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산 편성·운영

- 1)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특수학급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업교육비 편성
 “특수교육대상자 직업교육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에 의거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경비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훈련, 현장실습, 위탁교육활동비 등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
- 2) 특수학급 직업교육비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과 관련된 교재·교구 구입비, 재료구입비, 강사비, 위탁교육 활동비 등으로 유연성 있게 사용(단, 직업위탁 교육과정 운영 시 강사는 외부강사만 인정함)
 ※ 외부강사 수당은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에서 정함

마. 장애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1)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경기북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미래형 장애학생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꿈길’ 등을 활용한 양질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강화
- 2)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초등학교(5, 6학년) 과정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을 통한 진로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장애학생의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의 단계별 진로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 간 진로교육 연계* 활성화

* 초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중학교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고등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등과 연계 운영

- **중도중복장애(시각+발달, 청각+발달 등)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자립생활중심의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 **예술체육 분야의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중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고등학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지역 중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
- **장애학생의 직업실기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자격취득 과정 프로그램 운영비 및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3) 학생 진로역량의 체계적 관리

- 장애학생 직업흥미검사도구* 활용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전문 직업평가 기관과 연계한 직업평가 체계 구축·활용을 통해 **학생 진로역량의 체계적 발굴**
* 국립특수교육원 「발달장애이용 직업흥미검사(NISE-VISIT)」(2019) 적극 활용
- **학생의 특기·적성, 흥미, 요구수준에 기반 한 개인별 진로설계 및 진로·직업교육 계획 수립 철저**
- **학령기 학생 개인별 진로·직업교육 결과 및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 장애학생 진로취업 지원 시스템 적용(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교육부)**
: 특수교육과-16704(2021.12.7.)

2.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가. 목적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 지원 역량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나. 방침

- 1) 전문 인력 배치로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 2) 현장실습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실시를 위한 행·재정 지원 확대
- 3) 현장실습, 취업 알선 등을 통한 현장 교사의 취업지도 업무 지원
- 4) 진로·직업교육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지원
- 5) 권역 및 개별학교 차원의 실질적 연계·협력 강화
- 6)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1개소 추가 설치·운영 - 의왕정음학교

다. 운영 현황(총 7개소)

내용	수원권역	부천권역	이천권역	구리남양주권역	의정부권역	군포의왕권역	고양권역
지원 지역	수원, 평택, 화성오산, 안성	부천, 시흥, 광명, 안산	광주하남, 이천, 여주, 용인	구리남양주, 가평, 양평	의정부, 동두천양주, 연천, 포천	군포의왕, 안양과천, 성남	고양, 파주, 김포
관할 기관	아름학교	부천상록학교	다원학교	경은학교	송민학교	의왕정음학교(신설)	홀트학교

라. 세부 운영 계획

- 1)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내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지원 관련 다양한 유관기관과 직업재활 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등과 협업하여 각종 정보공유
- 2)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기초반, 심화반, 자격증반 등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센터별 특성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3) 상담, 평가 및 연수 지원

-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실시
- 관리자, 교사, 학부모, 학생 연수 실시
- 취업지도 매뉴얼, 취업지도 우수사례집 등 장학자료 제작

4) 취업지원

- 취업관련 사업 추진 정보 제공 및 안내
- 현장실습 사업체 개발 및 현장실습 직무지도
-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안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취업알선 및 지원고용 실시, 취업전 사전교육 및 취업지도
- 취업준비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 및 학생별 사례 관리
- 학교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지원
 - ※ 학교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자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 MOU 추진

5)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취업박람회, 각종 경진대회 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마. 예산 사용내역 (센터 별도 편성 운영 가능)

항목		사용 내역
인건비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강사, 보조강사 인건비
운영비	여비	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기본운영비	센터사용 공공요금, 시설유지보수, 사무용품, 비품 등 구입
	교육운영비	센터프로그램 및 현장실습 지원비, 차량대여, 교육용 재료비
	시설환경개선비	미래형 진로직업교육실 구축 및 시설환경 개선 등
	교재교구구입	직업평가 교구, 직업교육 프로그램 교재교구 등
	강사비	직업교육 프로그램 강사비, 직업평가 강사비, 교사 및 학부모 연수 강사비 등
	업무추진비	목적사업에 맞게 업무추진과 관련한 홍보물품구입, 현장실습처 및 사업체 개발, 협의회비 등

3.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

가.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직업교육 거점학교 역할 수행으로 인근 지역 소규모 특수학급 학생들의 직업교육 및 훈련지원

나. 방침

1) 지원 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급

2)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기회 확대

다. 운영 현황(총 8교)

운영교	성남테크노 과학고	이천제일고	안양공고	은행고	안성고	포천일고	수원정보 과학고	오산 정보고
지원 지역	성남, 광주하남 용인(수지, 처인)	이천, 여주 양평	안양, 과천	시흥	안성, 평택	포천, 연천	수원 용인 (기흥)	화성 오산

라. 세부 운영 계획

- 1) 학생의 적성에 적합한 학습중심 현장실습, 고용지원
- 2) 교내·외의 수업을 균형 있게 실시하되 지역사회 사업체와 연계하여 학습 중심 현장실습 실시
- 3) 인근 소규모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 지원
- 4) 교사·학부모 대상 진로직업교육 연수 지원
- 5) 진로직업교육지원가 인건비 지원

마. 예산 사용내역(참고)

항목	사용 내역	
인건비	진로직업교육지원가 인건비	
운영비	여비	거점학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기본운영비	시설유지보수, 사무용품, 비품 등 구입
	시설환경개선비	미래형 진로직업교육실 구축 및 시설환경 개선 등
	교육운영비	프로그램 및 현장실습 지원비, 차량대여, 교육용 재료비
	교재교구구입	직업평가 교구, 직업교육 프로그램 교재교구 등
	강사비	직업교육 프로그램 강사비, 교사 및 학부모 연수 강사비 등
업무추진비	목적사업에 맞게 업무추진과 관련한 홍보물품구입, 협의회비 등	

4. 학교기업 운영

가. 목적 :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으로 교내 및 지역사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나. 방침

- 1) 교육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에 의해 **성은학교, 부천상록학교, 부천혜림학교** 지정·운영
- 2) 운영 컨설팅을 통하여 지역사회 요구에 적합한 사업 종목 선정·운영

다. 세부 운영 계획

- 1) 지역 우수업체와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협약, 지역사회 내 사회적기업,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 운영, 민간 기업의 학교 내 유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2) 사업종목 선정 및 변경 등 전반적인 학교기업 운영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위원 구성·운영
- 3) 생산품에 대한 국가기관,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에 적극 홍보 및 온라인 판매, 우편 판매 등의 다양한 판로 개척으로 매출 증대 도모
- 4) 학교기업으로 등록 후에는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예산·회계 처리
- 5) 연중 컨설팅을 통한 사업 종목 선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 6) 전국 선진 학교기업 견학 및 벤치마킹을 통한 운영 내실화
- 7)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영리(이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특수학교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과 현장실습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라. 기대효과

- 1) 교내 및 지역사회 특수학교(급) 학생에게 학습중심 현장실습 기회 제공
- 2)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직업적 기초 기술 및 태도 배양

5.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원

가. 목적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보호 및 양질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기회 제공
- 2) 현장실습 안전관리 실태확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로 장애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된 현장실습 운영
- 3) 현장실습 운영 활성화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학교에서 사회로의 성공적 전환 성과 도모

나. 방침

- 1)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 조기 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준비 과정으로 운영 방식 전환
- 2) 유관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효율적 현장실습 운영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다. 세부 운영 계획

- 1)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 수정 사항 안내(추후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실습생의 안전과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현장실습 활동 유형, 인정절차, 인정 범위, 인정 기간 등을 학칙에 정하여 수업으로 인정
- 2)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역할: 현장실습 기관 선정 심의, 실습 시기 결정, 학생지도 및 현장실습 계획과 운영 전반을 협의하고 결정
 -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관련 내용 추가
 -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일반학교의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통합·운영 가능하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내용 협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과 안전이 강화된 현장실습 운영 철저
- 현장실습 전 학생들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실습처에는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이해교육, 장애인 차별금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교육 강화
 - 현장실습 중 교원의 입장지도 강화,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직무지도원 배치, 직무지도를 통하여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및 인권 침해 등을 사전 예방
 - 현장실습 후 보고회(평가회)를 통해 학생 만족도, 권익침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연도별·개인별 현장실습 현황 자료 체계적 관리 및 활용
 - *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 및 일자리 참여 현황 자료 제출 (추후 안내 예정)
- 4) 관련 법령 및 지침 규정 준수
-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근로계약체결, 실습생 권리 및 근로기준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 등 준수
 -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및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 부과 조항
- 5) 현장실습 관련 자료 활용
- 학생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안내자료(교육부, 2018. 2.)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방안(교육부, 2018. 3.)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사례집(국립특수교육원, 2019.9)
 - 사전에 **이만큼 다 배우고 가자**(현장실습 사전교육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워크북 (경기도교육청 2020.12.) → Kysenet(경기도특수교육정보자료실>진로직업교육>학습중심현장실습>자료실) 활용
 -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교육자료(국립특수교육원, 2020.12)
- 6) 장애학생 현장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 과정 운영: 지역사회 연계한 현장실습처 발굴
- 기관: 장애인표준사업장,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등
 -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학생 대상 직업교육의 질 제고와 학생의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고졸 취업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산업체 도제교육을 통한 현장실습 운영

6. 「학교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

가. 목적

-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및 취업지원
- 2) 교육청 및 학교에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장애인식 개선 및 다름을 인정하는 공감문화 확산

나. 방침

- 1) 2023~2025학년 학교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채용 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안내 예정
- 2) 장애인 고용 희망기관(교육청, 직속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 수요 조사를 받아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장애학생 선발

다. 세부 운영 계획

- 1) 2022.3.1. 신규채용을 위하여 교내 현장실습, 복지일자리사업 등 연계
- 2) 신규채용은 별도의 채용 계획 수립 후 채용 예정
- 3)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채용기관 관리자, 직무담당자, 근로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 지원

라. 학교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 현황 및 담당부서

(단위: 명, 2022.1.1.기준)

직무유형	교무보조	급식보조	사서보조	특수교육보조	행정보조	계
담당부서	노사협력과	학생건강과	도서관정책과	특수교육과		
인원	24	127	123	72	163	509

7. 진로직업교육 관련 행사

□ 2022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가. 주최 및 주관 : 교육부 / 울산광역시교육청

나. 행사 기간 : 2022. 11월 중 예정

다. 행사 장소 : 울산광역시 권역 내

라. 장애 영역 : 발달장애

※ 경기도대표 선발을 위해 도대회 실시 예정(6월중)

IV. 기대효과

-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장애학생의 취업률 제고 및 사회통합 실현
- 직업교육과정과 연계한 취업지원 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업 기회 확대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 기관 간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직업교육 기반 조성 및 취업률 제고

[부록]

[2022 진로직업교육 특별교부금 사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비고
1	장애학생진로체험활동지원-진로드림페스티벌	25,000	
2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	506,000	
3	전문직업인특화교육과정 운영	40,000	
4	특수학교직업교육중점학교운영	60,000	
5	학교간진로직업교육중점운영교 지원	40,000	
6	산업체도제교육형현장실습 운영	48,000	
7	현장중심맞춤형일자리사업 운영	40,000	
8	장애학생직업실기역량강화 지원	120,000	